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17657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윤종오 · 정혜경 · 전종덕
손 술 · 김선민 · 김재원
한창민 · 김준형 · 서왕진
황운하 · 백선희 · 용혜인
신장식 · 박은정 · 강경숙
차규근 · 이해민 · 정춘생
(18인)

주 문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 해상 항로 안전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맹이 곧 자동적인 군사 개입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는 해역에 군함을 보내면서 이를 단순한 항로 보호 활동이라고 설명하더라도, 해당 군함의 존재 자체가 군사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군함은 구호 차량이 아니며,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배치는 곧 군사적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본질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경제 위기이며,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적 · 외교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국이 외교적 협상과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분쟁 지역에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하거나 인근 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적 파병 검토가 아니라 외교적 긴장 완화 등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함.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음.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배치는 곧 군사적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음.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본질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경제 위기이며,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적 · 외교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